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

『구급시설내 계구사용과 수용자의 인권』

- 일시 : 2003. 7. 8.(화) 14:30~16: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1

국가인권위원회



EM006686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

『구금시설내 계구사용과 수용자의 인권』

- 일시 : 2003. 7. 8.(화) 14:30~16: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1



심는 순서

진행순서

발표문

<계구와 수용자의 인권>	...	5쪽
<계구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	17쪽
<계구의 종류 및 사용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	...	37쪽

자 료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중 별표>	...	57쪽
------------------------	-----	-----

진행 순서

- 14:30~14:4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14:40~15:10 계구시연
- 15:10~16:00 의견 발표
신양균(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장)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김안식(교정관, 법무부 교정과)
주용석
- 16:00~16:30 질의 및 답변
- 16:30 폐회



계구(戒具)와 수용자(收容者)의 인권(人權)

신 양 균

(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장)

1. 계구의 의의 및 성격

계구(戒具)란 넓은 의미로는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즉 계호(戒護)에 사용되는 도구(道具)를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계호업무에 사용되는 도구 가운데 특히 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즉 압박수단 (tools of restraint)를 의미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통상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행형법 제14조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 보호구의 네 종류가 있다.

1999년 개정 법률은 계구의 사용 이외에 강제력의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14조의2), 양자의 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경우에 계구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계구는 수용자의 신체에 직접 침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 이 점에서는 교도봉·가스분사기·최루탄 등과 같은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도관이 신체적인 유형력 행사로 수용자를 제압할 수 없거나 수용자를 제압한 이후에도 계속 저

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계구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내지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점에서, 수용자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1999년 개정 행형법 제14조는 계구의 사용요건을 명시하고 계구를 징벌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계구의 사용에 대해 비례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대판 1998.11.27, 98다17374).

2. 국제인권법과 계구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누구든지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내지 기본적 자유권이 구금시설에 수용된 자에 대해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의 공통의 목표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구의 종류나 사용요건이 수용자에게 고문에 해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1955년 제1차 유엔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되고 1957년과 1977년 두 차례에 걸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승인한 유엔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33조는 “연쇄나 사슬은 압박수단(instru-

ments of restraint)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른 도구들도 (a) 호송 도중 도주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로서, (b) 의료 직원의 지시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c) 다른 수단으로는 수형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 경우에 소장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압박수단들은 엄격히 필요한 이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이사회 각료위원회는 1987년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상향조정한 유럽형사시설규칙(European Prison Rules)을 제정하였는데, 동 규칙 제39조와 제40조에서 계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연쇄와 사슬의 사용 금지, ② 징벌의 수단으로 계구 사용 금지, ③ 도주, 의학적 이유, 피구금자를 진정시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④ 법률이나 규정을 통한 계구 종류와 사용방법 규율 등을 정하고 있다.

한편 1966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7월 10일 조약 제1007호로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7조는 「누구든지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약 인권위원회가 공표한 일반해석(general comments)은 구금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고문이나 금지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규약의 실시상황에 관해 가입국으로부터 5년마다 보고를 받고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1996년 일본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하면서 가족 수감이나 장기독거구금 등이 고

문에 해당한다는 강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1976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2월 8일 조약 제1272호로 발효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고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이나 피해를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과하는 행위를 말하며 각국은 이러한 행위를 인가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에 대해서는 2002년 선택의정서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비준국은 자국 내에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기관을 설치할 의무를 지고(제3조), 고문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협약 소위원회(sub-committee)가 국내에 있는 구금시설을 사전 동의 없이 방문, 조사를 행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 계구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문방지협약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이 예상된다.

3. 외국에서 계구의 사용

가. 미국

사법행정에 관한 미국 연방규정(Federal Regulations) 제5장은 교정국(Federal Bureau of Prisons)에 관한 것으로서 5절에 구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수용자에 대한 강제력의 사용과 압박수단의 적용」(Use of Force and Application of Restraints on Inmates)에 관한 규정 552.20 내지 552.27에서 계구의 사용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수용자가 타인을 폭행하거나, 정부재산을 파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상을 가하거나 혹은 난폭해지거나 곧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보이는 수용자를 통제하기 위해 직원들은 필요한 물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계구는 ① 징벌의 방법, ② 목이나 얼굴 혹은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거나 수용자의 호흡을 막는 방식, ③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이나 아주 심한 불편을 주는 방식, ④ 거실 문이나 창살과 같은 고정된 물건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 규정은 팔과 다리를 고정시키고 가슴을 가죽끈으로 묶음으로써 팔, 다리, 가슴, 어깨 네 군데를 압박하는 도구(four point restraints: 우리나라의 가죽 수갑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의 일종인 철제로 된 억압의자(restraint chair)에 대해 552.24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또한 계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사에 의한 건강상태의 체크,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계구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박의자의 경우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1997년의 경우 단기구금시설에 있는 16개의 억압의자가 6개월 동안 600회나 사용된 바 있다는 실무자의 보고가 있을 만큼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사면위원회 미국지부 보고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도 최소한 4명이 압박의자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한다. 한편 펜실바니아 주 등에서 전기충격장치(electronic shock devices)도 계구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나. 독일

독일 행형법 제11장(안전과 질서)은 특별한 보안조치(besondere Sicherungsmaß-nahme) 가운데 계구에 해당하는 결박(Fesselung)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88조1항에 따르면 “수형자의 태도나 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도망의 위험이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위험 혹은 자살이나 자상의 위험이 고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형자에게 특별한 보안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동조 4항에 따르면 외부통근, 심문을 위한 인치, 이송을 할 때에는 이러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도망의 위험이 고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역시 결박할 수 있다), 동조 2항은 특별한 보안조치로서, ① 물건을 압류하거나 영치하는 것, ② 야간 감시, ③ 다른 수형자와 격리, ④ 구금실 외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한하는 것, ⑤ 위험한 물건이 없는 특히 안전한 구금실에 수용하는 것 그리고 ⑥ 결박을 허용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수형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동의를 얻어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논의된 바 있다.

제5항은 결박을 포함한 모든 특별한 보안조치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제88조에 대한 연방통일관리규정에 따르면, 위험을 달리 방어할 수 없는 때에는 이러한 특별한 보안조치들을 병합하여 명할 수 있고, 이 조치들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심사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한 구금실에서의 수용이나 결박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90조에 따르면 결박은 원칙적으로 손이나 발에만 할 수 있다. 시설

의 장은 수형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결박수단을 명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결박을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할 수 있다. 동조에 대한 연방통일 관리규정에 따르면, 결박된 수형자는 야외에 있는 동안 결박되지 않은 수형자와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식사를 하거나 배변을 보기 위해 필요하다면 발을 결박한 다음 손의 결박을 풀거나 수형자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결박을 느슨하게 한다.

결박을 포함한 특별한 보안조치는 소장이 명하며,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는 다른 직원도 임시로 이를 명할 수 있지만 이 때에는 지체 없이 소장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수형자가 의사의 치료나 관찰을 받고 있거나 정신상태가 그러한 조치의 원인이 되는 경우 사전에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험이 급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의 입장을 구해야 한다(동법 제91조 1항, 2항). 시설내 의사는 결박당한 수형자를 - 외부통근, 인치 혹은 소송하는 동안 결박당한 경우가 아니면 - 즉시 그리고 이어서 가능한 한 매일 방문한다(동법 제92조 1항).

다. 일본

일본의 행형에 관한 기본법률이라 할 수 있는 감옥법(최근 1999년 개정)은 제4장에서 「계호」라는 표제어 아래 첫 번째 조문인 제19조에서 「계구의 사용」이라는 표제어 아래 「재감자가 도주, 폭행 또는 자살의 염려가 있거나 감 외에 있는 때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계구의 종류는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계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보호방(保護房)인데, 감옥법에는 이

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고 1967년 12월 21일 교정국장 통달(교정갑 제 1203호) 「보호방의 사용에 대해서」가 있다. 이것은 수용자가 자상·자살의 염려가 있거나 폭행, 시설의 손괴, 도주의 염려가 있는 때에 7일을 한도로 구금하는 시설을 말하며, 3일마다 갱신할 수 있다. 보호방에 소지할 수 있는 것은 휴지뿐이고 실내에서는 독서, 필기, 운동, 입욕 기타 일체가 금지된다. 통상 항변의 징벌로 이용되고 수형자들간에는 「고문방」, 「학살방」이라고 불리고 있다. 각종 계구들이 보호방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계호근무준칙 제 10조에 법률에 근거 없는 「보호실」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계구의 종류나 요건 등에 대해서는 감옥법시행규칙(1908년 제정, 최근 1996년 개정)에서 정하고 있다. 계구와 관련된 동규칙 제48조 내지 제50조의 내용은 우리나라 행형법 및 동시행령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계구의 종류로서 사슬이나 연쇄 대신 진정의(鎮靜衣)를 규정하고 있고(제48조 1항 1호), 진정의는 12시간 이상, 방성구는 6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 다만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시간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 하고 있다(제50조 2항).

<최근에 계구의 사용이 문제된 사안>

나고야 형무소에서는 모두 가죽 수갑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방에 수용된 수형자를 징벌할 목적으로 2002년 5월 27일 형무관 3명이 남성수형자(당시 49세)의 복부를 가죽 수갑으로 세계 묶고 이 수형자를 내장손상에 의해 사망케 한 사건 및 같은 해 9월 25일 형무관 5명이 남성수형자(당시 30세)의 복부를 가죽 수갑으로 묶어 그

수형자에게 내장손상에 의해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러한 수형자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에 관해 2003년 1월 30일 인권옹호국장이 법무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나고야 법무국장이 나고야 형무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를 행하였다.

"2. 계구의 사용에 대해

(1) 계구의 사용목적·요건에 관한 형무관에의 지도의 철저에 대해

보호방(保護房)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한 가죽수갑(革手錠)의 사용에 대해서는 1999년 11월 1일부 교정국장 통달「계구의사용및보호방에의수용에대해」에 따라 「보호방 수용만으로는 도주, 폭행 또는 자살을 억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방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해 계구를 사용할 수 있는」것임이 재차 확인되었으나, 이 통달에 위반하여 단기간에 복수의 형무관이 상기 사건을 감행한 점에 비추면 위 통달의 취지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가죽수갑 사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간수장 계급 이상의 간부직원은 물론 그 지휘에 따라 가죽수갑을 채우고 푸는 등에 종사하는 부간수장 이하의 제일선의 형무관에 관해서도 위 통달의 취지를 포함하여 계구의 사용목적과 그 요건에 대해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폭행의 염려」를 이유로 하는 가죽 수갑 사용의 억제에 대해

위 사건은 모두 수형자를 보호방에 수용한 경우에 계구 사용의 요건의 하나인 「폭행의 염려」를 명목으로 감행된 것이다. 본건과 같이 형

무관의 직무의 집행에 관한 적절한 관리가 행해지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폭행의 염려」를 이유로 가죽 수갑의 사용이 남용됨으로써 수형자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다.

이상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염려」를 이유로 하는 가죽 수갑의 사용에 관해서는 형무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포함하여 가능한 한 그 사용의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나고야 형무소의 일련의 수형자 사상사건을 받아 설치된 법무성의 「행형운영에관한조사검토위원회」(委員長・但木敬一事務次官)가 지난 3월 5일 열려, 森山眞弓 法相이 사건에서 남용이 문제가 된 가죽수갑을 없애고 새로운 계구의 개발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가죽 수갑은 교정시설 외에 출입국관리시설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모든 수용시설에서 폐지되게 된다. 但木 차관에 따르면 새로운 계구의 선정과 함께 제조나 배치, 형무관의 습득 등을 고려하고 가죽 수갑을 반년 후에 철폐하고 그 사이에 전 교정시설에서 가죽 수갑의 사용사례를 모두 교정국과 교정관구에 동시에 보고하는 것과 채울 때부터 풀 때까지의 수형자의 비디오 촬영을 의무로 하였다.

4. 맺음말

행형의 과제를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면 행형의 법률화, 행형의 사회화 그리고 행형의 국제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계구의 사용과 관련하여 직접 고려해야 하는 점이 행형의 국제화 및 법률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권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계구의 사용에 관한 국제화 및 법률화의 실현은 교정의 어느 다른 분야보다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화의 차원에서 피구금자처우를 위한 『최저기준규칙』을 준수하는 한편 선진 행형의 모델을 보여주는 유럽감옥규칙을 참조해야 한다. 특히 이 규칙 제1조가 「자유의 박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는 물질적·정신적 조건 아래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규정의 중점을 처우(處遇)에서 인권(人權)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법률화의 차원에서 계구의 종류, 사용요건,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로 정하고 의사에 의한 계속적 관찰, 계구 사용에 대한 기록 및 상급관청에 대한 보고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인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신체의 자유에서 인격적 권리로 이행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계구나 징벌과 관련된 사건들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계구 자체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이를 사용하는 교도관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 와 있다. 보안장비를 사용한 강제력 행사가 남용될 가능성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할 것이다.



계구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이 상 희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 서론

계구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였다¹⁾.

우리 사회에서,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가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구치소, 교도소, 청송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외에 또 있을까? 그리고 보면 계구란 구금시설 내의 독특한 규율통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계구가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사용 요건과 집행이 매우 엄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 그리고 계구 사용이 또 다른 형벌로써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국제연합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하 '최저기준규칙'이라고만 함) 제57조에서 '구금형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 밖의 처분은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사실 자체로써 고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행형제도는 정당한 격리나 규율 유지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에서의 고유한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

1) 별지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 참조

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하 '보호원칙'이라고만 합니다) 제6조에서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은 정당화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구 사용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용되거나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계구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계구 관련 규정

■ 행형법

제14조(계구)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보호구

③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999. 12. 28. 신설)

④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하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 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행형법시행령

제45조(계구의 사용)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 포승과 수갑은 소요, 폭행, 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 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면보호구는 6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법무부훈령 제333호)

제2조(계구의 구분) ① 계구는 그 종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포승은 호송용 포승과 개인용 포승으로 구분한다.
2. 수갑은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으로 구분한다.
3. 사슬은 긴 사슬과 짧은 사슬로 구분한다.
4. 안면보호구는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와 소란방지형 안면보호구로 구분한다.

②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계구 이외의 다른 신체구속용구를 수용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구의 사용요건) ①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및 출장을 위한 호송 기타 교정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수용자를 호송할 때

2. 도주, 자살, 자해, 폭행, 폭동 등(이하 '교정사고'라 한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교도관(경비교도 포함)에 대하여 폭행 등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이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4. 시설 또는 각종 기기를 파손하거나 파손하려고 하여 이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후에 소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교도관이 당직간부에게 그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구의 사용요건) ① 포승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1. 신사승은 고령자, 여자, 환자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로서 현장검증, 사회견학 등을 위한 개별호송시

그 수용자의 명예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2. 양수승은 이송, 출정 등 교정시설이외에서의 호송 중에 사용하거나 교정시설내에서의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하퇴승은 당해 수용자의 범 죄내용, 형명, 형기, 범수, 성격, 수용생활태도 등으로 보아 교정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고 특히 성격이 포악하여 타인에 대한 폭행 등 위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

4. 하지승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려고 하거나 시설물 등을 파손하려고 할 때, 또는 교정사고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다시 교정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할 때

② 수갑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1. 금속수갑은 수용자의 호송시 또는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가죽수갑은 정신이상자, 중범자 등 충동적, 우발적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큰 수용자에게 장기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사슬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1. 포승,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가 임의로 이를 풀거나 손괴한 때, 또는 상습적으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교도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위험성이 현저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교정사고의 효과적 예방이나 진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외부병원에 입원중인 수용자에게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발 또는 손과 침상의 적당한 부위에 짧은 사슬을 연결하는 등 도주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당해 수용자의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안면보호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1.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는 벽이나 철격자 등에 자신의 머리 또는 안면을 받아 자해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2. 소란방지형 안면보호구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타수용자의 평온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제지하기가 어려운 때

제7조(계구사용시의 감독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계구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그 사용실태를 확인,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용중인 계구는 주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한다.

제8조(동태과약 등) ①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는 독거수용하고 그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형편상 부득이 할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교정시설 소속의사는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은 계구의 사용으로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계구 사용의 중지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소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9조(주의사항) ① 교정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수용자의 연령, 성격, 범수, 범죄의 내용, 수용생활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사고유발의 위험성 등을 분석하여 사용할 계구의 종류, 사용방법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교정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계구는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수용자의 지위

계구 사용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수용자의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수용자의 지위를 특별권력관계로 보고, 수용자에게 일정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존재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권리 제한의 내용과 범위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형벌목적 및 행형의 과제로부터 직접 도출되었고, 따라서 형벌목적과 행형의 과제는 동시에 내용적으로 행형상의 모든 조치에 대한 근거규범이자 한계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특별권력관계라는 이름하에 수용자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자를 교도행정의 객체로만 파악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우며, 수용자도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이다. 따라서 구금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도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구금 그 자체로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이외에 다른 고통이나 제재를 가해서도 아니 된다. 계구 사용 문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4. 계구 사용과 관련한 인권 침해 유형

가. 별지에 첨부된 사례들은 대표적인 계구 남용 사안들이다. 계구 사용의 남용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첫째, 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구 사용 요건, 즉 소요, 폭행, 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용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또는, 사실상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입소시 교도관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관에게 처우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계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 둘째, 형식적으로 소요, 폭행, 도주, 자살의 우려에 해당하지는 하나, 계구를 사용하지 않고 계호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구가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폭행이나 손괴를 동반하지 않은 소요란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까지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지나친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계구 사용 요건 중 남용되는 것이 '자해 또는 자살 우려'이다. 객관적인 징후 없이 계구를 남용하는데 가장 적절한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라. 그리고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소멸하면 당연히 계구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필

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여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 계구 사용을 고의로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인권침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용자가 모욕감을 느끼는 자세로 계구를 사용하거나 사슬을 사용한다든지(사슬에 대해서는 아래 항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임),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외부병원에 이송한 뒤 팔, 다리 등에 사슬을 채우는 경우 비인도적 처우의 문제가 발생한다.

5. 제도상의 문제

가. 계구 종류의 문제

(1) 행정법에서는 계구의 종류로 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슬은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고문기구로, 그것을 사람 몸에 감는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비인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원칙에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서도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슬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기준규칙에서도 사슬과 족쇄를 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²⁾, 독일 행형법에서도 직접 강제 수단으로 '사람의 신체적 힘, 그 보조수단으로 수갑, 직무상 허용된 검도총포류자극물질 등 무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법무부 행형법 개정안인 형사시설법안에서도 계구로 포승, 수갑, 구속태, 방성구만 인정하고 있어 사슬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한편, 가죽수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수갑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행형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죽수갑은 '양팔의 팔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가죽띠로 허리에 고정시키고 양 손목을 다시 쇠고랑으로 묶는 계구'를 의미하는데, 위 규칙에 의하면, '정신이상자·중범자 등 충동적·우발적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큰 수용자에게 장기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가죽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죽수갑이 수용자의 팔과 허리를 완전히 밀착시켜 묶어 놓음으로 운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식사, 세면,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을 통제하는데 이를 교정사고의 '위험성'만으로 '장기간' 계속 사용하게 하고 있는바,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아닌, 단순한 '위험성'만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큰 가죽수갑을 제도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계구사용의 한계에도 위반된다.

2) 최저기준규칙 제33조: chains or irons shall not be used as restraints

나. 계구사용 요건의 문제

(1) 1999. 12. 28. 개정 전에는 계구 사용의 요건으로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기타 필요한 경우'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기본권 제한 규정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개정 행형법에서는 좀더 기본권 제한 원리에 충실하게, '기타 필요한 경우'를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고 변경함으로써 좀더 제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소장의 전적인 재량하에 계구 사용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계구는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이므로 그 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구 사용은 계호의 일종이므로 계호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계호의 목적이란 수용자가 타인 혹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므로, 계구 사용의 요건을 '도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형사시설의 설비 기타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2) 그리고, '도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형사시설의 설비 기타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추상적이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구체적이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3) 계구가 남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소요'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이다. '소요'란 사전적 의미로 '여러 사람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남'으로 해석되는데 실무에서는 수용자가 소리지르는 것을 '소요'로 보고 계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용자가 폭행이나 물건 손괴를 동반하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리지르는 수용자를 일시 격리 수용함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폭행이나 손괴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이상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4) 참고로, 최저기준규칙 제33조는 계구 사용의 요건으로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계구를 해제한다)',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행하는 경우(이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들고 있고, 일본의 형사시설법안(제42조)은 계구의 사용요건으로 '도주의 우려',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형사시설의 설비 기타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다. 계구 사용 한계의 문제

(1)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계구 사용은 수용자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의 행사로써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데, 계구가 손쉽게 수용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된다. 따라서 계구 사용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되, 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구 사용의 한계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도 '사용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참고로, 최저기준규칙 제34조는 '계구는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독일 행형법은 '직접 강제가 교도소의 집행 및 보완조치를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다(제94조 제1항)'는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가장 적절한 여러 조치 중 그 개별성과 일반성에 비추어 최소한의 침해가 되는 조치를 선택해야 하고 그에 의해 예견되는 침해가 그 행사로 인한 효과와의 관계에서 비례를 일탈해서는 안된다(제96조)'는 원칙을 명시하였다.

(3) 계구 사용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계구 사용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그런데 행형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으며, 위 규칙 제9조 제2항에서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큰 계구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이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 계구 절차상의 문제

(1) 계구 사용 실태를 보면, 사전에 그 사유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구 사용은 수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계구 사용시 그 사유를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위 규칙에서 교정시설 소속 의사로 하여금 계구 사용 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구 사용이 수용자의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사 진단을 행형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구 사용이 수용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 개시 직후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결론

계구는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잔혹성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 원리에 위배되는 경우 바로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구금 시설 내의 어떠한 처분 중에서도 엄격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계구사용이다. 그런데, 아직, 계구의 종류로 사슬과 가죽수갑이 아무렇지도 않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수용자의 인권 보장이 아직 요원해 보이기만 하다.

무엇보다, 절제력 있는 계구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입각한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의 원칙에 맞는 계구 사용을 위하여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별지>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

가.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판결

소년수인 갑은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동료 재소자와 싸웠고, 교도관이 화해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교도소측은 1994. 7. 19. 갑의 양손목을 수갑으로 채우고 포승으로 양손목과 어깨를 묶은 다음 독거실에 수용하였다. 그런데 갑은 같은 해 7. 20. 21:00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하급심은, '포승, 수갑 등의 계구는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 소장의 명령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데, 위 사건의 경우 자살 등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포승으로 묶고 수갑을 채운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단, 자살에 이르기까지 상당 시간 포승과 수갑으로 포박한 것이 행형목적이나 계구의 사용목적, 당시의 무더운 날씨 등에 지나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구 사용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

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갑은 단지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동료 재소자와 몸싸움을 하는 것이 적발되어 교도관으로부터 화해할 것을 종용받고도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봐도 갑은 그 당시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이나 자해를 행하려고 시도한 바 없음을 뿐 아니라, 장차 그들을 격리수용할 경우 갑이 위와 같은 행동을 감행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는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설사 갑이 동료 재소자와 재차 싸움을 벌일 염려가 있고 규율 위반으로 장차 징벌에 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들을 서로 격리수용하거나 독거 수감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소년수인 갑에 대하여 반드시 계구를 사용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이 갑을 포승으로 묶고 수갑을 채운 상태로 독거 수감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 갑이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싸운 경위의 조사에 응하고 식사를 하는 등의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그가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무려 27시간 동안이나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 판결

갑은 1994. 1. 19. 13:45경 인사를 공손히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훈계를 받자 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이어 출입문을 발로 2, 3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교도소 직원이 같은 날 14:00경 갑을 불러내어 이러한 소란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

우려 하자 갑은 이를 거부하며 직원과 먹살을 잡고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교도소 직원인 소외 김○○등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묶인 채 독거실인 10사 19호실로 수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갑이 끌려 나가면서 휴게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갑은 독거실에 수용된 후에도 계속하여 수갑이 채워지고 양 손목과 양팔 및 상체가 포승으로 묶인 상태로 지내오다가 같은 달 22. 개최된 징별위원회에서 소란행위 및 시설물 손괴를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종전과 같이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묶인 상태로 독거실인 10사 20호실로 수용되었으며, 독거실에 수용된 같은 달 19.부터 징벌처분을 받은 같은 달 22.까지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단식을 계속하여 왔고, 교도소 측은 갑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묶은 지 9일이 지난 같은 달 27. 수갑과 포승을 풀어 주었다. 갑은 그 동안 위와 같이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취침시 쪼그려 앉거나 옆으로 누워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수용 생활에 있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교도관의 먹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갑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적법하나, 갑이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갑에 대하여 더 이상 계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하여 9일 동안이나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교도소 당국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0. 5. 19. 선고 99가합35 판결

갑은 1997. 4. 18. 교도소에서 40여건의 집필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같은 달 30. 금치 2월의 징벌을 받았고, 같은 달 30 계구해제에 관한 보고전 집필허가 등을 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식수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2회 걸쳐 고함을 지르며 대변을 식기에 담아 배식구를 통하여 복도에 던져 같은 해 6. 17 금치 2월의 징벌을 받았다.

그리고 1997. 4. 30. 징벌위원회에서 피고인에게 집필허가를 해주지 않은 교도관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징벌위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고, 1997. 5. 2. 집필허가 불허 및 계구의 계속 사용 등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신의 대변을 양손으로 받아 배식구를 통해 복도로 던지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같은 해 6. 17.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고, 1997. 8. 6. 장기간의 징벌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하기 위한 집필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칫솔대를 부러뜨려 이를 삼킴으로써 같은 해 9. 10. 금치 2월의 징벌을 받았다. 그런데 교도소측은 갑이 처음으로 소란을 피운 1997. 4. 18.부터 같은 해 9. 9.까지 하루에 2, 3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계구인 수갑과 사슬을 사용하여 묶어 두었다. 갑은 위 소란행위 외에도 1997. 6. 16.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같은 달 25. 바늘을 삼킨 적도 있었는데, 계구 사용 기간 대부분은 별다른 소란을 피우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갑이 오물을 투척하고, 소란을 피우며, 바늘이나 칫솔대 등을 삼키는 등의 행위를 할 무렵에는 갑의 소란행위 등을 중지시키고 갑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일단 갑이 진정된 이후에는 갑을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가사 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계구만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에서 1997. 4. 18.부터 같은 해 9. 9.까지 거의 6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갑에게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정당한 계구 사용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이므로, 계구사용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466일 계구 사용 사건

갑은 법정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가 2002. 3. 7. 체포되어 재수감되면서 바로 조사실에 수용되었는데, 갑에게는 2000. 3. 7.부터 계구가 사용되었다.

광주교도소에서 2000. 3. 7.부터 2001. 4. 2.까지 금속수갑 2개가, 2000. 3. 11.부터 2001. 4. 2.까지 가죽수갑이 사용되었고, 목포교도소로 이감된 후 2001. 4. 2.부터 6. 18.까지 모두 466일 동안 계구가 사용된 채 수용생활을 하였다. 특히, 2000. 3. 7. 이후 초기 26일 동안은 단 한 차례도 계구를 해제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목욕 등을 위해 짧으면 3일에 1회, 길면 1주일에 1회 정도 계구를 해제하였고, 해제 시간도 1시간 여에 지나지 않았다.

계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

김 안 식
(교정관, 법무부 교정과)

1. 교정현황 개요

교정시설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금고형 등 자유형을 받은 수형자들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이는 크게 교도소, 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로 구분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45개의 교정시설이 있으며, 2003. 7. 2일 현재 12,433명의 교정공무원이 총 59,570명에 달하는 수용자의 수용관리 및 처우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37,466명(62.9%)이고, 미결수용자는 22,104명(37.1%)이며, 또한 이에는 사형수, 무기수,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외국인 등 각종 특이수용자가 포함되어 있다.

2. 계구(戒具)의 의의

계구(戒具)라 함은 위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도주, 타인에 대한 폭행, 또는 소요행위를 야기하거나 혹은 자살의 기도 등으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침해하거나 위협할 경우에 이를 진압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하는 실력강제의 기구를 말한다

(행형법 제14조제1항).

이러한 계구의 종류는 각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포승, 수갑, 사슬 등 주로 수용자의 팔이나 다리를 제압하여 그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교정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구에는 포승·수갑·사슬·안면보호구 등 4종류가 있다(행형법 제14조제2항).

3. 계구사용의 필요성

교정시설은 각종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형벌집행이 그 주요한 존립근거이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행형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에 있지만, 교정시설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처우를 결코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형벌집행과 수용자 처우의 기본이 되는 행형법 제1조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전제로서 '수형자 격리(隔離)'를 명시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의 바탕위에서 교정교화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수형자 격리'는 원칙적으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가 크지만, 막연하게 교정시설에 격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교정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한이 계호권(戒護權)으로서, 이는 경찰의 수사권, 검찰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및 법원의 재판권에 비견되는 형사사법상의 중요한 권한인 것이다.

이에 따라 행형법의 구조도 제1장 총칙에 이어, 제2장과 제3장에서 수용과 계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이하에서 접견과 서신, 급여, 의료, 교육과 교화, 작업 등 수용자에 대한 각종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교정질서의 유지와 교정처우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계구 사용에 관한 법규정

계구사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용자의 신체에 대하여 실력을 가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따라서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소위 '矯正行政 法治主義'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이에 따라 행형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계구사용의 조건과 그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나. 계구사용의 조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용자에 대한 계구 사용은 법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한 근거규정인 행형법 제14조 제1항을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이 조항은 계구사용의 조건으로서 계구사용에 관한 정황적 조건과 그 필요성(즉 비례의 원칙 또는 기본권 최소제한의 원칙)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행형법 제 14조는 일반적인 계호권으로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 계구사용에 관한 특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 정황적 조건

i) 도주 : 도주는 법원의 선고, 혹은 구속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자의로 그 실력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이는 국가의 형벌집행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가 형사사법작용에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지난 1988. 10. 영등포교도소 수용자 탈주사건이 당시 국민들과 사회에 미쳤던 영향을 생각해보면 수용자 도주사건이 야기하는 사회적 혼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주를 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이를 진압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행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주방지를 위한 것이다.

ii) 폭행 : 이는 수용자가 제3자 즉 직원 또는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위하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폭행을 말한다.¹⁾ 혼거수용이 대부분인 우리 교정시설의 수용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수용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행위는 피해를 당한 수용자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시설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계구를 사용하여 이를 진압하거나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정직원에 대한 폭행은 이러한 위험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소요 : 이는 다수의 수용자가 공동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교정시설에서는 다수의 수용자가 일시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용자가 처우불만 등을 사유로 공동으로 소요행위 또는 난동, 폭동을 저지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는 당연히 교정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가 되며 그 진압과 방지를 위하여 계구를 사용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v) 자살의 방지 : 수용자는 극도의 고독감, 배신감 또는 중형으로 인한 좌절감 등으로 자살의 충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교정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살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는 평소에도 수용자의 행동을 항상 면밀하게

1) 수용자 또는 직원에 대한 폭행, 상해, 상해치사 혹은 인질사건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관찰하여야 하며, 특히 사형·무기형 등 중형선고를 받은 때,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시, 또는 접견시 이혼요구 등 가족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철저한 행동관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하루 24시간을 지속적으로 직원이 계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살의 방지를 위하여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자살할 경우 그 책임을 모두 교정시설에 묻기 때문에 자살의 방지를 위하여 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v) 기타 사유 : 이상의 4가지 경우 외에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기타의 경우로는 자해, 고성으로 인한 안면방해, 시설 또는 기기의 손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행형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4조 참조). 즉, 자살에 이르지 않는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자해한다든지, 주야간 가릴 것 없이 계속 소리를 질러 다른 수용자의 안면을 방해한다든지, 혹은 교정시설의 일부나 기기 등을 손괴함으로써 교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계구사용의 필요성 : 비례의 원칙 또는 기본권 최소제한의 원칙

그런데,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정황적 조건이외에,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계구 사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이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즉, 위에서 설명한 수용자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

서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계구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등의 행위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침해하는가 여부의 판단문제는 소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소장이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결국, 이에 관한 요점은 수용자의 인권과 교정질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비교형량하여 계구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구사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즉, 행형법 제14조제3항은 계구를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에서는 계구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구사용에 있어 계호를 담당하는 직원은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4. 계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계구의 종류는 포승, 수갑, 사슬 및 안면보호구 등 4종류²⁾가 있으며

2) 계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외국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 일 본

- 계구의 사용 : 재감자가 도주, 폭행 및 자살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감옥 외부에 있을 때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감옥법 제19조)
- 계구의 종류(4종) : 진정의(鎮靜衣), 방성구(防聲具), 수갑, 포승(감옥법시행규칙 제48조)

○ 독 일

- 특별안전조치 : 수형자가 그의 행동에 의하여 그의 정신상태를 기초로 하여 도주

(행형법 제14조제2항),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과 모양·규격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형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형법시행령과 계구의 제식과 사용절차에 관한 규칙(법무부훈령 제333호) 등 하위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가. 포 승

포승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사용한다.(행형법시행령 제46조제1항) 포승에는 호송용 포승과 개인용 포승이 있으며(계구의 제식과 사용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

위험이 현저하거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폭행의 위험, 자살이나 자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조치를 행할 수 있다.(행형법 제88조제1항)

- 특별안전조치로서 포승조치를 할 수 있으며, 외출·이송시 등에도 포승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88조제2항, 제4항 참조)
- 직접강제 : 교도관이 집행 및 안전조치를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강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신체적인 힘, 그 보조수단 또는 무기로 강제할 수 있는 바, 신체적인 힘의 보조수단은 특히 수갑을 말한다.(동법 제94조제1항, 제95조제1항 및 제3항)

○ 영 국

- 소장은 수용자의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상해, 기물 손괴 및 소요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혹은 이송중의 구속확보 등을 위하여 계구사용을 명할 수 있다. 계구는 필요이상의 기간동안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내무대신이 정한 제식, 방법 및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감옥법 제46조 참조)

○ 유엔 피구금자처우 최저기준규칙

- 수갑, 사슬, 족쇄, 구속복 등과 같은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동규칙 제33조)
- 계구의 제식 및 그 사용방법은 중앙 교정당국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이러한 계구는 필요한 기간을 경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동규칙 제34조)

항제1호), 실무상 주로 호송용 포승을 사용한다.³⁾

포승의 사용방법에는 4가지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아울러 이를 그림으로 부연설명하고 있다(동규칙 별표2).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계구의 사용요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는 행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다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포승사용의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i) 신사승 : 이는 포승으로 양손목만 결박하는 형태로서, 외관상으로는 포승사용 여부를 잘 인지할 수 없는 형태이다. 이 방법은 고령자, 여자, 환자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수용자의 현장검증 및 사회견학 등을 위한 개별호송시 수용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ii) 양수승 : 이는 양손목과 팔뚝을 결박하는 형태로서, 이송·출정 등 주로 교정시설 외부로의 호송중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iii) 하퇴승 : 이는 양손목 및 팔뚝과 하퇴부를 결박하는 형태로서, 수용자의 범죄내용·성격·수용생활 태도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도

3) 호송용 포승은 길이 11m, 굵기 직경 0.55cm이며, 개인용 포승은 길이 7m, 굵기 0.3Cm이다.

주·폭행·소요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고 특히 성격이 포악하여 타인에 대한 폭행 등 위해의 우려가 현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iv) 하지승 : 이는 양손목 및 팔뚝과 하지를 결박하는 형태로서, 신체에 대한 제압의 정도가 가장 강한 포승 사용의 형태이다. 이는 폭행 등 교정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로 타인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려고 할 때, 또는 교정사고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다시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현저한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나. 수 갑

수갑은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용요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3 참조) 또한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의 제식은 동규칙 별표1 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i) 금속수갑 : 이는 앞으로 채우는 방법과 뒤로 채우는 방법의 2가지가 있으며, 수용자의 호송시 또는 도주·폭행·소요 등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사용하는 형태이다.

ii) 가죽수갑 : 이는 소위 '혁수갑'으로서 허리와 손목을 함께 결박하도록 되어 있는 수갑의 한 종류이며, 주로 정신이상자, 중범자 등 충동

적 또는 우발적으로 도주·폭행·소요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큰 수용자에게 장기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형태이다.

다. 사슬

사슬은 은색 철제로 제작되고, 그 길이는 짧은 것(2m)과 긴 것(4m)의 두 종류가 있으며 굵기는 0.5cm이다. 사슬의 사용방법은 포승중 양수승 및 하퇴승의 방법과 같지만 포승대신 사슬을 착용하므로 신체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욱 강하고, 따라서 그 사용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즉, 사슬의 사용은 행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승 또는 수갑만으로는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제3항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 사용요건 2가지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i) 포승과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가 임의로 이를 풀거나 손괴한 때 또는 상습적으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교도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위험성이 현저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교정사고의 예방이나 진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ii) 외부병원에 입원중인 수용자에게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

요한 때 : 이는 외부병원 입원수용자 중 도주자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수갑으로 한쪽 손목을 시갑하여 침대에 연결하여 시정하고, 수갑의 길이가 부족하여 환자의 움직임 등에 불편을 줄 경우에는 수갑을 추가하여 연결할 수 있으며, 도주를 기도하거나 자해·폭력을 행사하는 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에 대신하여 사슬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외부병원입원및진료수용자등관리지침, 예규보일 제 594호, 2002. 4. 30.). 이 경우 해당 수용자의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5조 제3항제3호).

라. 안면보호구

안면보호구는 머리보호형과 소란방지형의 두 종류가 있으며, 머리보호형은 두건모양으로서 곁감과 안감 사이에 2Cm 이상의 솜을 넣었으며, 소란방지형은 두께 3.0 내지 8.5mm의 특수고무로 제작되어 입과 턱을 에워싸는 둥근 그릇 모양의 입마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는 머리를 뒤집어 씌우는 형태이며, 소란방지형 안면보호구는 머리에 착용하여 입마개로 입을 막는 형태이다.

안면보호구는 행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경우에 이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계구로서,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면보호구 사용은 질식 등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그 사용에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사용시간을 원칙적으로 6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필요성에 따라 1회 연장한다 하여도 결코 9시간을 계속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행형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i)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는 수용자가 거실 벽이나 철격자 등에 자신의 머리 또는 안면을 들이받고 자해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에 사용한다.

ii) 소란방지형 안면보호구는 폭행·소란 등 교정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제지하기가 어려운 때에 사용하는 형태이다.

5. 계구사용의 절차

앞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계구사용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 요건의 적용과 계구사용시 법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그 사용절차에 대하여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가. 소장의 허가

교정시설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소장에게 있기 때문에 계구사용에 관하여도 당해 소장의 명령 즉 허가가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행형법시행령 제45조). 이는 수용자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교정직원들이 공정성을 잃고 계구를 남용하거나 이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며, 소장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이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긴박하거나 휴일 등 소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시행령 제45조 단서)⁴⁾. 이와 같이 상황이 긴급하여 소장의 허가없이 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422호) 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평일 주간에는 4시간 이내에, 야간 또는 휴일에는 정상근무일 오전중에 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독거수용 원칙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는 독거수용하고 그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계구의

4) 물론 이때 계구를 사용한 직원은 반드시 당직간부에게 그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

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 이는 도주·폭행·소요 등 교정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자를 다른 수용자로부터 격리하고, 아울러 동정파악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소장은 수용형편상 부득이 할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동조 단서조항).

다. 계구사용의 감독

소장이 계구사용을 명하였을 때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수용자의 계구사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계구를 반드시 주 1회이상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7조) 이는 수용자에 대한 동정파악과 함께 계구착용에 따른 상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의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일선 교정시설에서는 '계구사용감독부'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5)

라. 의무관의 건강상태 확인

계구를 착용중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정시설 소속 의무관이 수시로 그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이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만약 계구의 사용으로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소장에게 계구사용의 중지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도록 하고 있

5) 계구사용감독부에는 수용자의 번호·성명·수용거실 및 착용계구의 종류, 사용시간, 착용사유, 계구집행 담당자, 계구교체 확인, 소장확인란 등이 있다.

다.(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3항)

마. 계구의 해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구 착용자에 대하여는 담당직원이 수시로 이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만약 더 이상 계구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소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계구 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계호근무준칙 제9조제1항,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9조제3항 참조)

6. 계구사용의 현 실태

2003. 6. 27. 현재 전국 45개 교정시설에서 법령이 정하는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여 계구를 착용하고 있는 수용자의 수는 95명⁶⁾이다.(여자 수용자 4명 포함) 이를 계구의 종류 및 착용 사유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계구의 종류별 착용현황

인 원	종 류				
	수갑(금속)	가죽수갑	포 승	사 슬	안면보호구
95명	87명	5명	1명	2명	없음

6) 이는 전체수용자중 약 0.16%에 해당한다.

나. 계구 사용의 사유별 현황

사유 인원	자살 우려	자해 우려	폭행	도주우려	소요
95명	75명	12명	8명	없음	없음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구의 종류별 사용은 금속수갑이 대부분이며(91.6%), 기타 가죽수갑, 포승, 사슬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7) 이는 최근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인권강조 정책에 따라 일선 교정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수용자의 인권을 보다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계구사용의 사유를 살펴보면, 자살우려자에 대하여 계구를 사용한 경우가 계구착용자 총 95명중 75명(78.9%)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존속살인·강도강간·가정파괴 등으로 사형, 무기형 등 중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자살의 충동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들의 자살 방지를 위하여 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자해 우려자에 대한 계구사용이다. (12.6%) 이에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강한 충동성 혹은 자기과시성 등에서 기인하거나 또는 처우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목적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자해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7) 이 통계는 출정이나 외부 교정시설로의 이송을 위하여 호송중 짧은 시간동안 포승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7. 계구사용에 관한 향후 개선방향

앞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교정직원의 일반적인 계호권만으로는 교정질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계호근무준칙,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계구를 사용하고 있다. 앞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각 교정시설에서는 계구 사용시 그 사용요건,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조치함으로써 결코 계구의 남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계구착용자의 대부분이 자살 또는 자해우려자가 많으므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상담기법의 개발, CCTV 등 과학적 계호수단의 강화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계구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계구사용은 그 요건과 방법 및 절차를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계구의 남용사태가 없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정국에서는 앞으로도 각종 지시와 교육 등을 통하여 각 교정시설의 소장 및 일선 담당직원들이 계구를 적법하고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또한, 계구사용이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계호근무준칙과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등 법무부훈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계구사용 관련 규정중 수용자의 인권 내지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상위법령으로 규율하도록 함이 법치주의의 원칙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계구사용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현재 법무부 정책기획단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수용자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